

第97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保健社會委員會會議錄

第 5 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 時：1997年9月4日(木) 午後3時

場 所：保健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地域別保育施設實態에 關한議政活動의件
2. 서울特別市女性發展센터使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

1. 地域別保育施設實態에 關한議政活動의件 1面
2. 서울特別市女性發展센터使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2面

(15時 35分 開議)

○委員長 朴贊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特別市議會 제97회 임시회중 제5차 保健社會委員會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委員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지역구 의정활동도 바쁘실텐데 틈틈이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서울시議會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委員長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는 헛됨이 없이 우리 나라가 21세기에 복지선진국으로 들어서는 밑거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협조하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地域別保育施設實態에 關한議政活動의件

(15時 37分)

○委員長 朴贊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별 보육시설 실태에 관한 의정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지난 회기 때 서울시 보육업무에 관한 종합보고를 통해서 서울시 보육시설 활성화의 시급성을 우리 모두 공감한 바 있습니다.

이번주 토요일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委員 여러분의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가지고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별 보육시설에 관한 의정활동의 건을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보육시설 운영실태에 관한 의정활동계획

보육시설의 확충과 현대화는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보육시설은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의 기초적인 인성이 형성되는 장소인만큼, 지금부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찾아 시정·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활동기간：1997.9.6(토) 10：00~

□활동대상：서울시내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활동지역：보건사회위원 거주 지역별 실시

□활동방법：관내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파악 또는 지역의견 수렴

<p>□작안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사업 중사자의 교육자적 자질 함양 대책 ○예산지원의 적정성 문제 ○보육수요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 대책 ○보육료 등 예산지원의 적정성 등 <p>□행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정활동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97.9.9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만 당일 의정활동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hr/> <p>○委員長 朴贊秀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유인물에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의정활동 실시 후 반드시 활동보고서를 이번 회기중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 <hr/> <p style="text-align: center;">2. 서울特別市女性發展센터使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p> <p style="text-align: center;">(15時 39分)</p> <p>○委員長 朴贊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女性發展센터使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議事棒 3打)</p> <p>家庭福祉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家庭福祉局長 金愛良 家庭福祉局長이 서울特別市女性發展센터使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p> <p>존경하는 朴贊秀 委員長님, 그리고 保健社會委員會 여러 委員님들, 항상 家庭福祉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委員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될 서울特別市女性發展센터使用料等徵收條例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를 다른 시·도의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하여 재정자립도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금년말에 개소 예정인 서부여성발전센터에 설치될 수영장 운영에 따른 수영장료 징수를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p> <p>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성발전센터 이용에 따른 기술교육과 생활문화교실 수강료는 1인 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아동보육료는 1인 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을</p>	<p>하고, 수영장 수강료를 1인 월 4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사용료가 인상되었다고는 하지만 기술교육 수강자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자, 7등급 이하의 모자가정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혜택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委員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용료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여성발전센터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p> <p>감사합니다.</p> <p>○委員長 朴贊秀 수고하셨습니다.</p> <p>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p> <p>○專門委員 尹炳國 專門委員 尹炳國입니다.</p> <p>서울特別市女性發展센터使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부분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p> <hr/> <p style="text-align: center;">(報 告)</p> <p>5.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센터 사용료의 현실화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97년 11월 개소예정인 서부여성발전센터에 설치된 수영장 운영에 따른 수영장수강료를 신설하고자 제안된 것임. ○주요내용을 보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교육수강료(1인 1월)7,000원→8,000원으로 인상하고 · 생활문화수강료(1인 1월)7,000원→8,000원으로 인상하고 · 보육료(1인 1월)5,000원→6,000원으로 인상하고 · 수영장수강료(1인 1월)40,000원을 신설함.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현재 서울시에서는 3개의 여성발전센터를 직접 운영중에 있고 오는 11월 서부여성발전센터의 개관을 앞두고 있음. 그리고 현행 여성발전센터의 수강료는 '95.1.15 조례개정에 의해서 인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